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671
----------	------

발의연월일 : 2025. 1. 21.

발의자 : 박성준 · 정춘생 · 전종덕
용혜인 · 한창민 의원
(5인)

찬성자 : 182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에 따르고, 동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혼방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격앙된 시위대들을 향한 국회의원 윤상현의 소위 ‘월담 혼방 발언’은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삼시간에 전파되었고,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다 잘 될거다, 아무 걱정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게시글이 쏟아졌음. 국회의원 윤상현의 불법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이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되었던 것임.

법원에 대한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의 무법 사태를 조장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는 폭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국회의원 윤상현의 불법·폭력 선동 및 조장 발언과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인해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경찰 51명이 부상당했으며, 그 중 7명은 중상을 당하였음.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로 인하여 약 7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도 매우 심각함.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당사자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들의 범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하는 내란죄, 제91조 2호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제115조 소요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제13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141조 공용물의 파괴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등 형량이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함. 국회의원 윤상현은 해당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윤상현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2025년 1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내부 집기 및 기물 등을 파손하고, 서버 파괴 시도 및 판사에 대한 위협 시도를 하는가 하면 경찰 51명을 상해하는 등 사법기관에 대한 폭동을 일으켰음. 그리고 해당 1·19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국회의원 윤상현의 폭동 조장·선동 발언이 있었음.

나.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2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관저 앞에서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조 세력에 의해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관대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이 수준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적극 선전 및 선동을 하였고,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음. 이 시점이 사법부에 물리적·폭력적 행위를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작점이 되었음.

다. 특히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18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시위에 참석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월담을 시도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 “곧 혼방될 것이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등의 발언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법원에 대한 습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음.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 90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침투하여 법원 내부를 파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수색하는 등의 난동을 일으켰으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폭동이 발생하였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윤상현의 발언이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폭도로 돌변하도록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임.

라. 또한,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혼방될 것이다”라며 수사상황을 전파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사법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 직권남용금지에 해당함.

마. 2025년 1월 19일에 일어난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인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난입하여 온갖 기물을 파괴하였고, 언론인과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해 우리나라 법치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폭동이었음. 이번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의 파괴죄, 특수주거침입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폭동으로 매우 심각한 중범죄임.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이후 47일만에 국가기관인 법원 침탈,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 제2의 내란이 일어난 것임. 제2의 내란이 일어나는 것에 기폭제가 된 국회의원 윤상현의 폭동 조장·선동 발언은 국회의원 제명을 넘어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 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회의원 윤상현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